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44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김선교 · 이양수 · 구자근
최수진 · 최보운 · 김상훈
이헌승 · 김위상 · 윤상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제23조의4(휴학)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